

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4. 10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3월 29일 마포구청장 제출
나. 회부일자 : 2007년 3월 29일
다. 상정일자 : 제127회 임시회 제3차위원회 (2007. 4. 10)
상정, 심사,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지역경제과장 황 중 익

가. 제안이유

신기술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사업가와 초기 기업가들에게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·기술 등의 지원을 위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가 준공예정인바 입주대상과 시설 및 운영지원 등 창업보육센터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(1)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명칭에 관한사항을 규정(안 제2조)
- (2)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자 자격요건 및 모집방법 등을 규정함
(안 제4조)
- (3)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게 자금 지원 및 행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(안 제5조)

(4) 창업보육센터 운영관련 심의기구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 내용을 규정함(안 제6조)

(5)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의 임대료, 공공요금 등 입주자 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

(6) 창업보육센터의 공동 운영 및 위탁 운영, 수탁자의 의무 등에 대하여 정함(안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)

(7) 창업보육센터 운영 수탁자에 대한 지도·감독 사항을 규정(안제12조)

(8) 창업보육센터 운영 수탁자가 협약 등을 위반하였을 시 위탁을 철회할 있는 근거를 규정함(안 제1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35조,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7월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2공구에 개관될 마포구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시설·장소의 제공과 경영·기술분야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육성·발전시키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, 운영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안 제6조에서는 부위원장 선임방법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,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보완되어야하고,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등에게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동 조례안에 규정하여야 될 것이며, 또한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수당 및 여비 등에 따른 필요한 비용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7. 4. 10.

제안자 : 행정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사항 중 회의소집 및 의결 규정 등의 일부내용과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가.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 하도록 하고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규정하도록 함.
(안 제6조제3항, 제4항)

나. 안제6조에 제6항과 제7항을 신설하여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및 의결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.

다. 안 제7조 내지 안 제14조를 각각 안 제8조 내지 안 제15조로 하고, 안 제7조에 회의 출석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중 “관하여”를 “관하여는”으로 한다.

안 제6조제2항중 “위원장을”을 “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”로 하고,

동조 제3항중 “국장이되며, 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련
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”를 “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
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
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”로 하며,

동조 제4항중 “하며”를 “하고”로, “있다. 다만,”을 “있으며, 공무원인
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 다만,”으로 하고,

동조에 제6항과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⑥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
하는 때에 소집한다.

⑦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, 출석위원
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안 제7조 내지 안 제14조를 각각 안 제8조 내지 안 제15조로 하고,

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수당등) 구청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수정안 대비표)

원 안	수 정 안
제3조(적용범위)창업보육센터의 운영, 입주승인, 창업보육센터 입주자(이하 "입주자"라 한다)의 지원 및 사후 관리 등에 <u>관하여</u>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	제3조(적용범위)----- -----관하여는 ----- -----.
제6조(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(생략) ②운영위원회는 <u>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 ③위원장은 창업보육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<u>국장이되며</u> , 위원은 <u>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련 공무원 중에서</u>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	제6조(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) ①(원안과 같음) ②-----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-----. ③-----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<u>하</u> 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	④-----하고 -----있으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 다만,-----.
⑤ (생략) (신설)	⑤ (원안과 같음) ⑥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 ⑦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원 안	수 정 안
(신 설) 제7조 내지 제14조(생 략)	제7조(수당 등)구청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8조 내지 제15조 (원안 제7조 내지 제14조와 같음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7. 3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정 이유

신기술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사업가와 초기 기업가들에게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·기술 등의 지원을 위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가 준공예정인바 입주대상과 시설 및 운영지원 등 창업보육센터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명칭에 관한사항을 규정(안 제2조)

나.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자 자격요건 및 모집방법 등을 규정함

(안 제4조)

다.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게 자금 지원 및 행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

(안 제5조)

라. 창업보육센터 운영관련 심의기구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 내용을

규정함(안 제6조)

마.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의 임대료, 공공요금 등 입주자 부담금에 관하여

규정함(안 제7조)

바. 창업보육센터의 공동 운영 및 위탁 운영, 수탁자의 의무 등에 대하여

규정함(안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)

사. 창업보육센터 운영 수탁자에 대한 지도·감독 사항을 규정(안 제12조)

아. 창업보육센터 운영 수탁자가 협약 등을 위반하였을 시 위탁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(안 제13조)

3. 제정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, 제135조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5조

4. 조 례 안 : 별첨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07. 3. 8 ~ 3. 28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(2007. 3. 29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와 제135조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①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이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육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(이하 “창업보육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제1항에 의해 설치한 창업보육센터의 명칭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3조(적용범위) 창업보육센터의 운영, 입주승인,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(이하 “입주자”라 한다)의 지원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입주대상 등) ①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은 사업목적과 분야가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의거 고시된 “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”에 속하는 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시행일 현재 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되 구청장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기업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선정은 구보 및 일반 신문 등의 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거나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③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기관 및 단체를 입주시킬 수 있다.

제5조(지원 등) ①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 시설 및 설비를 창업보육센터 안에 설치할 수 있다.

②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③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와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창업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의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④구청장은 입주업체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) ①창업보육센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창업보육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되며, 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⑤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.

1. 창업보육센터 운영 기본방침 결정
2. 창업보육센터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
3.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
4. 예비입주자의 선정
5. 입주자의 입주기간 연장 및 졸업
6. 기타, 구청장이 창업보육센터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제7조(입주자의 부담금) ①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, 임대료, 공공요금, 공동 장비 사용료,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등(이하 “부담금”이라 한다)을 부담하여야 한다.

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등을 적용하며, 이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운영방법)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. 다만, 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운영, 위탁운영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공동운영) ①구청장은 입주자의 경영 및 기술 지도를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운영 실적이 있는 서울 소재 대학교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와 공동 운영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·방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0조(운영의 위탁) ①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,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 소재 대학교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·방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수탁자의 의무) ①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 및 공동운영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는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.

③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- ④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⑤기타 창업보육센터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 간의 협약에 의한다.

제12조(지도·감독 등)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를 공동운영 또는 위탁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지도·감독 및 필요한 경우 장부·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3조(위탁의 철회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창업보육센터의 공동운영 및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와 제12조의 지도·감독 관련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때
2.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
3.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
4. 기타 공동 운영 및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